제9조(추진절차) (계속)

<표 6> 위험성 추정 (평가척도: 빈도(5)×강도(4))

구 분		중대성(강도)			
		최대(4)	대(3)	중(2)	소(1)
가능성(빈도)	최상(5)	매우높음(20)	높음(15)	높음(10)	낮음(5)
	상(4)	매우높음(16)	높음(12)	보통(8)	낮음(4)
	중(3)	높음(12)	높음(9)	낮음(6)	매우낮음(3)
	하(2)	보통(8)	낮음(6)	낮음(4)	매우낮음(2)
	최하(1)	낮음(4)	매우낮음(3)	매우낮음(2)	매우낮음(1)

<표 7> 위험성 추정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(평가척도: 빈도(5)×강도(4))

위험성(도) 크기		허용 가능 여부	개선방법
16~20	매우높음	허용 불가능	즉시 개선 (작업 중지 : Safety call)
9~15	높음		신속하게 개선
8	보통		계획적으로 개선
4~6	낮음	허용 가능	필요에 따라 개선
1~3	매우 낮음		유지 및 관리 (현상태 유지)

④ 4단계 :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-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.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,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.실행한다.

⑤ 5단계 : 기록

-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한다.